



절편녹용 협상 어디까지 왔나

- 뉴 97년도부터 제기, 내년부터 수출 요구 -

뉴질랜드가 절편녹용을 수출키 위해 자국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나서는 등 그 고삐를 더욱 죄어 오고 있다.

지난 4월30일 뉴질랜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신을 발송해 절편녹용 수출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는 서신을 발송해 왔다.

뉴질랜드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우리 측에서 절편녹용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뉴질랜드산 절편녹용이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절편녹용 수입 불허’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한 한편 수입이 성사되더라도 국내 양록농가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 5년 이상은 유예시키고 물량 또한 국내 양록농가의 피해를 고려, 제한적 양만 수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측 정부 관계자는 본회의 요구에 대해 “뉴질랜드가 97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절편녹용 수출 문제를 더 이상 보류시키기는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97년부터 절편녹용 수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우리측 정부는 부적합 녹용 감별방법 등 기술적 문제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절편녹용 수출을 요구하던 뉴질랜드는 2000년 3월30일 농업 및 통상장관이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실시, “한국산 절편녹용이 한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데 반해 뉴질랜드산 절편녹용의 수출을 불허하는 것은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BT)’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발언은 결국 같은 해 5월 2일 실시된 제 3차 한뉴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녹용관련 1차 실무회의를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우리측 정부 관계자는 “WTO에 제소될 경우 승산도 없을 뿐더러 패할 경우 뉴측이 절편녹용과 관련해 제시하는 모든 사항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회의는 절편녹용 품질기준을 식약청을 통해 협의키로 결정하고 끝이 났다.

같은 해 10월 제 2차 실무회의에서는



절편녹용 품질기준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됐으며 이듬해 5월에는 현지 검사관 파견 등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본회에서는 2000년 10월 성명서를 통해 절편녹용 수입 불허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이듬해 5월 뉴질랜드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절편녹용 수입허용 압력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우리측 정부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그간의 협상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실시된 절편녹용 수입저지 결의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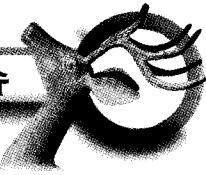
2001년 9월 11일 양록 역사상 초유의 인원이 모여 절편녹용 수입저지를 위한 양록인 결의대회를 개최, 국내 양록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본회가 간담회를 개최, 절편녹용 수입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하는 한편 국내 양록산업이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수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사관 조기파견을 반대하고 절편 녹용 협상과정에서 '생녹용 절대 불허 방침'을 명문화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차기 실무회의시부터는 양국 생산자가 포함된 4자 회담을 제안했다. 4자 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 수용할 의사 를 밝히고 뉴질랜드양록위원회에 4자 회담을 제안하라고 본회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올 1월 본회는 뉴질랜드양록위원회에 4자 회담 성사 협조를 요구했으나 뉴질랜드양록위원회는 준비 기간 및 일정상 불가함을 밝히고 차기 실무자 회의시부터 4자 회담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2박3일간 실시된 양국 전문가 회의에서 뉴측은 우리측 정부에게 절편녹용 수출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절편녹용 가공시설 기준 준수요구에 대해 한국내 업자와 비차별적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녹용전문가 2명을 1주간 파견하여 절편녹용 가공공장 등을 정밀 조사할 것 제안해 왔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2002년 말까지 절편녹용 품질 기준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회분함량은 전체 평균 28%, 절편 개별은 35%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건조 감량은 14%이하로 하여 절편 생녹용은 불허한다는 본회의 입장은 반영시켰다. 그러나 건조감량을 준수하여 절편 생녹용을 불허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



나 의약품으로서의 녹용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축산물로의 절편 생녹용 수입 여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회의 입장으로 지난 6월 1일 실시된 대정부 간담회에서 본회는 협상 진행시 의약품으로든 축산물로든 절편 생녹용 만큼은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절편건녹용에 대해서도 그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국내 양록 농가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한의 기간동안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뉴측은 올해 안으로 절편녹용과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절편녹용 수출을 피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측 정부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들을 대부분 받아들일 만큼 절편녹용에 관해 적극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 자체로 시간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난항을 표했다. 다만 “생산자 단체간의 협의사항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요인이 많은 만큼 뉴양록위원회와 채널을 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뉴질랜드가 절편녹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는 6월25일 예정된 절편녹용 관련 실무자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견돼 금번 회의는 절편녹용 수입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4자회담의 성사 여부와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양목**

▣ 절편녹용 관련 우리측 정부 부처별 상황

- 6. 11(화) 관계부처(복지, 외교, 농림, 식약청 등) 대책회의
 - 6. 1 생산자 단체 간담회 수렴 의견 논의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 절편녹용 규격기준(한약규격집) 및 시설기준안 마련(금년말 공포 대비)
 - 품질 및 제조관리 관련 검사관 파견 준비
- 복지부 한약담당관실
 - 절편녹용 수입 관련 국내 한약 유통시장 파급효과 분석
 - 절편녹용 제조 및 유통관리 방안 마련(식약청과 협의)
 - 수입허용 관련 제반사항(수입허용 시기, 유예기간 설정, 물량 및 조정기간 설정 등)
- 외교통상부 아태통상과
 - 협의결과에 따른 진행상황 점검 및 일정조정
- 농림부 축산경영과
 -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에 따른 농가보호 대책 마련